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이해민의원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이해민 · 이주희 · 이병진

김선민 · 모경중 · 박정현

김 윤 · 남인순 · 문진석

송재봉 · 이용우 · 김준혁

김남희 · 최혁진 · 조인철

박은정 · 신장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 분석 ·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국회과학기술처는 국회의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나. 국회과학기술처의 직무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의 지위 등을 규정하고 그 임명을 위한 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회과학기술처의 공무원 임용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제3조제4호에 따른 국회과학기술처의 직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영향평가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영향평가 시 일반 국민 등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9조).

바.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에게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국회과학기술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과학기술처(이하 “과학기술처”라 한다)는 국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과학기술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과학기술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3.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4.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국내외 과학기술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6.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조(처장) ① 과학기술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과학기술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과학기술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4 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과학기술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과학기술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하나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

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 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과학기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과학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학기술영향평가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보고 등)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을 “국회입법조

사처, 국회과학기술처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과학기술처·국회과학기술처장”으로 한다.